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8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권향엽 · 남인순 · 이기현  
서영석 · 김 윤 · 홍기원  
박지원 · 윤건영 · 김남근  
박희승 · 박지혜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3항·제4항 및 제52조제3항·제4항 신설 등).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
2.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단급식소의 조리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리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2. 급식시설의 위생 기준
3. 운영일지 작성에 관한 기준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기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양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 중 “제51조 또는 제52조를”을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로 한다.

제101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2. 급식시설의 위생 기준

3. 운영일지 작성에 관한 기준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기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양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제10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④ · ⑤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

제4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